

[2018년 최신판 해커스 CFP 실전모의고사] 1쇄 오타정정노트

(2018. 5. 7. 업데이트)

페이지	수정 부분	수정 전 → 수정 후	수정일
모의고사 1회 지식형			
14	40번 보기 ④	④ 평준형 사망급부의 경우 연령 증가에 따라 위험보험료가 증가하며 정기보장금액은 적립금과 함께 증가한다. → ④ 평준형 사망급부의 경우 적립금이 증가하게 되면 순보장금액은 증가하지만 순보장금액의 위험단위당 위험보험료는 감소한다.	17.9.6.
20	66번 보기 ①	① ~ 1억원인 자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 한도 금액은 연 300만원이다. → ① ~1억원인 자의 경우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금액은 연 400만원이다.	
모의고사 1회 사례형			
4	1번 보기 ④	④ 총부채상환지표는 가이드라인보다 8.44% 높게 ~ → ④ 총부채상환지표는 가이드라인보다 8.44%p 높게 ~	18.1.2.
	1번 보기 ⑤	⑤ 총부채부담지표는 22.36%로 건전한 재무구조를 나타내고 있다. → ⑤ 총부채부담지표는 22.52%로 건전한 재무구조를 나타내고 있다.	18.3.27.
28	2번 박스 보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~ 물가상승률로 인상됨 → •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~ 물가상승률로 인상됨 • 자녀의 교육 및 결혼자금은 고려하지 않되, 이정애의 연금보험은 해지하지 않고 계속 납입하여 은퇴자금으로 활용함 (빨간색 글자 추가) 	18.5.7.
모의고사 2회 지식형			
40	35번 보기 ④	④ ~ 한도 내에서 납입액 전액을 소득공제 한다. → ④ ~ 한도 내에서 납입액을 소득공제 한다. (빨간색 글자 삭제)	17.10.24.
모의고사 2회 사례형			
8	13번 디렉션	~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. → ~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. (KOSPI200 지수선물 거래승수 500천원) (빨간색 글자 추가)	18.1.2.
10	18번 디렉션	~ 대출기간 5년, 이자율은 연 6%, 매월 말 ~ → ~ 대출기간 5년, 이자율은 연 6% 월복리, 매월 말 ~ (빨간색 글자 추가)	
11	21번 보기 ②	② 439,688천원 → ② 440,719천원	
31	13번 보기 ②	② 상가 구입 시 ~ 합계액은 63,580천원이다. → ② 상가 구입 시 ~ 합계액은 62,200천원이다.	
35	II 재무제표_1. 저축성자산	장기주택마련펀드 → 장기주택마련저축	17.9.6.
36	III 자산 세부내역_1.	장기주택마련펀드 → 장기주택마련저축	
39	22번 박스 보기	나. 부부에게 ~ 7,850천원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하다. → 나. 부부에게 ~ 추가적인 자금 확보가 필요하지 않다.	17.10.24.
	21번 보기 ②	② ~ 투자자산이 아닌 저축성보험으로 분류해야 ~ → ② ~ 투자자산이 아닌 저축성자산으로 분류해야 ~	18.1.2.
정답·해설			
8	40번 해설_④	④ 평준형 사망급부는 연령 증가에 따라 위험보험료가 증가하며 정기보장금액은 적립금의 증가에 따라 감소한다. → ④ 평준형 사망급부는 적립금이 증가하게 되면 순보장금액은 줄어들지만 순보장금액의 위험단위당 위험보험료는 증가한다.	17.9.6.
19	1번 해설 ㉓_⑤	⑤ 총부채부담지표는 22.36%로 건전한 재무구조를 나타내고 있다. 총부채부담지표 = 총부채 잔액/총자산 총부채부담지표 = (20,194 + 141,441)/722,950 = 22.358%	18.3.27.
		→ ⑤ 총부채부담지표는 22.52%로 건전한 재무구조를 나타내고 있다. 총부채부담지표 = 총부채 잔액/총자산 총부채부담지표 = (20,194 + 141,441 + 1,200)/722,950 = 22.524%	

26	27 번 해설_②_①	① [X] 피상속인의 ~ 선사망하였으므로 한영찬 , 한민호 ~ → ① [X] 피상속인의 ~ 선사망하였으므로 한민수 , 한민호 ~	17.9.6.
26	27 번 해설_②_②	② 해설 전체 → ② [X] 공동상속인 박미란, 한영훈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공동상속인 한영희는 한승호의 상속재산을 단독상속하게 된다.	18.5.7
31	9 번 해설_③	950,000 × 4% = 38,000 → 950,000 × 3.16% = 30,020	17.10.24.
50	20 번 해설_①_박스	• a: 확정 성자산의 증가계수 → • a: 현금 성자산의 증가계수	17.9.6.
64	21 번 해설	<p>해설 전체 →</p> <p>① 확정급여형(DB형) 퇴직연금의 퇴직 시 퇴직급여 세전평가액을 구한다. 1) 평균입금을 구한다. PV 6,000 × 40%, N 19, I/Y 2.5, CPT FV = 3,836.760 2) 퇴직 시 퇴직급여의 세전평가액을 구한다. 3,836.760 × 20 = 76,735.209(STO1)</p> <p>② 확정기여형(DC형) 퇴직연금의 퇴직 시 퇴직급여 세전평가액을 구한다. PMT(E) (6,000 × 60%)/1.025, N 20, I/Y (5.5 - 2.5)/1.025, CPT PV = 52,607.842 → 52,607.842 × 1.055²⁰ = 153,496.926(STO2)</p> <p>③ 과세대상 이연퇴직소득세를 구한다. 과세대상 이연퇴직소득 230,232.135¹⁾ 1) 76,735.209(STO1) + 153,496.926(STO2) - 퇴직소득공제 - 12,000²⁾ 2) 근속연수대비 소득공제(10년 초과 20년 이하) 4,000 + 800 × (20 - 10) = = 218,232.135 ÷ 근속연수 ÷ 20 = = 10,911.607 × 12 × 12 = 환산급여 = 130,939.281 - 환산급여대비소득공제 - 75,622.676³⁾ 3) 환산급여대비 소득공제(1억원 초과 3억원 이하) 61,700 + (130,939.281 - 100,000) × 45% = 퇴직소득과세표준 = 55,316.605 × 세율 × 24% - 5,220⁴⁾ 4) 6~40%의 6 단계 초과 누진세율 = 환산 전 산출세액 = 8,055.985 ÷ 12 ÷ 12 = = 671.332 × 근속연수 × 20 = 이연퇴직소득산출세액 = 13,426.642 × 1.1 × 1.1⁵⁾ 5) 지방소득세 10% 포함 = 이연퇴직소득세 = 14,769.306(STO3) (지방소득세 포함)</p> <p>④ 과세대상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구한다. 1) 과세대상 운용수익을 구한다. 500,000(IRP 세전평가액) - (76,735.209(RCL1) + 153,496.926(RCL2)) = 269,767.865 2)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(지방소득세 포함)를 구한다. 269,767.865 × 16.5% = 44,511.698(STO4)</p> <p>⑤ 은퇴시점에 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 세후평가액을 구한다. 500,000(IRP 세전평가액) - 14,769.306(RCL3) - 44,511.698(RCL4) = 440,718.996</p>	17.9.11.
71	5 번 해설_①	1) 상가 B의 증여일 현재 10년 이내인 2011년 1월 1일에 ~	18.1.2.

		2) 2011년 1월 1일에 증여한 예금에 ~ → 1) 상가 B의 증여일 현재 10년 이내인 2011년 4월 1일에 ~ 2) 2011년 4월 1일에 증여한 예금에 ~	
	5번 해설_㉒	1) $120,000 \times 30\%$ (10년 이상 보유) → 1) $120,000 \times 30\%$ (10년 이상 보유)	
74	13번 해설_㉒	2) 취득세 = 취득세 과세표준(700,000 + 30,000) × 취득세 세율(4.6%) = 33,580 3) 취득세와 부가가치세 합계액 = 33,580 + 30,000 = 63,580 → 2) 취득세 = 취득세 과세표준(700,000) × 취득세 세율(4.6%) = 32,200 3) 취득세와 부가가치세 합계액 = 32,200 + 30,000 = 62,200	
76	22번 해설_나.	나. [O] 부부에게 ~ 7,850천원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하다. → 나. [O] 부부에게 ~ 추가적인 자금 확보가 필요하지 않다.	17.10.24.
	22번 해설_나._2)	$52,150 - 44,300 = 7,850 \rightarrow 52,150 - 44,300 - 19,500 = -11,650$	
	23번 해설_나.	장기주택마련펀드 → 장기주택마련저축	17.9.6.